



■ 뉴캐슬 방역 철저히 해야

8월 17일 가축위생연구소 소장실에서 개최된 8월 정례 가축질병에찰협의회(회장 설동섭박사)는 최근 뉴캐슬백신 판매량으로 볼때 후반기 질병발생이 우려되므로 뉴캐슬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 줄것과 현재 자율화된 종계장에 대한 추백리 검색을 시도 가축위생시험소가 철저히 점검하여 앞으로 추백리틀이 땅에서 뿌리뽑기로 하였다.

또한 ND, ILT방역에 대해서 잡지홍보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세미나 등을 통해서 수시로 홍보키로 했다.

■ 농축수산유통정보 창간

- 타블로이드판 24면, 매주 월요일발행 -

「농축수산유통정보」가 9월3일자로 창간되었다.

한국농축수산유통연구원(원장 류달영)에 의해 타블로이드판 24면으로 첫선을 보인 이 정보는 전국일원의 각종 농축수산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어 생산농민, 유통인, 소비자, 유관정책담당자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주 월요일에 발행할 예정이다.

◇주요기사내용◇

- 농축수산물, 농자재에 관한 시세정보
- 시세동향 분석, 단기 관측

- 전국 5대 도시권 시세비교
- 산지 및 도매시세, 소매시장가격
- 수출입정보, 포장, 비축동향
- 소비기초정보
- 저장, 포장, 수송 정보
- 최신 해외유통정보
- 학계, 업계 연구논문
- 농축수산업 정책기사 및 해설
- 소득 정보

■ 단미사료 수입희망물량 등 제시요청

한국단미사료협회(회장 : 이남재)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동물성단백질 및 무기물단미사료의 수입추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하여 최근 축협·사료협회 등 실수요자 단체에 수입희망물량, 수입시기와 도착시기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단미사료협회는 수입추천 단체로서 실수요자의 의견을 참고, 국내산 해당 단미사료의 부족현상 예상시는 부족량에 한하여 수입추천을 하고 특히 성어기에 도입어분이 도착되는 사례 등은 지양해 나갈 방침이다.

또 농수산부 장관이 사료수입계획에 따라 시달하는 연간 수입계획량 범위내에서 수입 추천총량으로 하고 사료조절단체가 실수요자별로 정하는 수량을 실수요자 추천수량으로 하되 국내 생산이 가능한 원료는 국내산을 우선적으로 이

용하며 공급부족시는 국내수급상황을 실수요자와 사전협의하에 적기에 수입해 나가면서 월별 수요량을 사전 책정하고 일시에 많은 양을 추천하여 국내회화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침을 세웠다.

■ 한국가금문화재개발연구원 창립총회

- 일시 : 84. 9. 18 오후 2~6시
- 장소 : 한국투자금융(주) 8층 대강당
- 연락 : 832-6274(장용식 ; 창립자 대표)

■ 한국낙농학회(회장 김환경)

지난 8월17일 서울대농대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

행정관례

■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 법 원 : 83. 8. 23 대법원
- 선고결과 : 면직처분취소에 대한 상고 기각 (판시사항)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사유중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를 받은 사실 외에 다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 왔고市長과 피고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원고에 대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라 하여 직권면직처분함은 부당하다.

(판결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1) 1980. 5. 14. 16:00경 소외 P 등과 함께 광주지청 노조지부장실에 물러가 지부장 소외 Y에게 장성전매서 소속 기능직 K를 벌교전매서로 전보발령한 것에 항의, 소란을 피움으로써 직원간의 파벌의식을 조장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2) 담배매도업무에 종사하면서 1980. 12.

중 3회에 걸쳐 담배소매인 L (C명의로 소매)에 대한 매도전표를 허위작성하여 금51,500원을착복하려다가 위 L의 항의를 받고 되돌려준 사실이 있고 (3) 두 차례의 광주전매서 기능직 8등급의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인 23점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세가지 사실을 이유로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능력이 결핍되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데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심이 심리한 바에 의하면, 위 직권면직사유, (1),(2)항 사실은 그 진상이 원고는 소외 P가 노조지부장실에서 소외 Y와 시비할 때 위 P를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가 위 매도전표를 허위작성하여 금원을 착복하려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다만 담배소매상인들로부터 담배대금을 받고 담배주문 및 매도전표를 같은 근무자인 소외 M에게 넘기면 동 M이, 위 전표를 받아 소매인들에게 담배를 교부하는데 동인의 사무착오로 두 차례에 걸쳐 위 L에게 합계금51,500원 상당의 담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L의 전화를 받고 현금 51,5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3)항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근무성적 평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광주시장의 표창과 피고로부터 능률적 직무수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표창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 위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그밖에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법무부 송무과 제공)

■ 직무상 과로로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

- 법 원 : 83. 12. 27 대법원 판결
- 선고결과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불지급 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기각

〈판시사항〉

업무상재해에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해당되며,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정도를 급속히 악화시키거나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판결이유〉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K는 1976. 4. 부터 소외 S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는데 1981. 4. 7 02:10경 위 회사의 염색조합실에서 야간근무중 갑자기 사망하여 부검한 결과 그 사인은 심부전으로 판명되었는바, 위 망인은 호흡기계통의 질병이 생기기 쉬운 매우 비위생적인 작업공정과 작업환경에서 만5년간 작업을 해왔고, 더욱 사고 당일의 작업량은 매우 과중하였던 것으로 동인의 사인인 위 심부전증은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발병한 것이거나 그 작업환경 때문에 통상의 경과과정을 현저히 벗어나게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이 위 망 K의 사망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 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서 소론과 같은 범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법무부 송무과 제공〉

형사판례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자동차운전자와 신뢰원칙의 한계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83. 8. 27.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원심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에 관여하는 자는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고 상대방이 감히 법규위반 행위에 나오리라는 것까지를 예견하여 그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고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中略.....)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신뢰의 원칙상, 위 피해자가 사전에 방향을 전환하려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도 아니한 채 갑자기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트럭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는 것까지를 미리 예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피해자가 위 도로교통법의 제반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갑자기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트럭의 진로 전방으로 나오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그 옆을 통과하려고 하였음에 어떤 잘못이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이 노폭 약 10미터의 편도 1차선 국도로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J)자형으로 연하여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서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적을 울려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하고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잘못도 없다고 하였음은 신뢰의 원칙 내지 자동차운전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원)

■ 시가 7만원 상당의 酒食접대와 뇌물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83. 5. 12.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시가 금 70,000원 상당의 주식(酒食)을 접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수뢰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 인정과 같다면, 피고인이 위 이 때수로부터 받은 그 관시와 같은 주식의 접대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 자동차의 對向운전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

-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83. 5. 27.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도로상에서 자동차를 대향운전에게 되는 경우 각 운전자는 서로, 상대방이 상호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하겠으나 상대방이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사정이 예상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신뢰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 관시내용과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中略)

거기에 형법 제268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들은 사인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선택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